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2. 4.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08년 1월 18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08년 1월 2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3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1. 28)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송요출)

가. 개정이유

- 노후, 낙후된 공업도시의 이미지 개선 및 친환경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도시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광고물 관련 업무 등의 소속부서 재조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디자인과 신설
 -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가로경관과 광고물디자인팀, 광고물개선팀을 이관하고, 공공디자인팀(5명)을 신설
- 도시환경국 소속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 변경하고
- 팀 이관

- 디자인기획팀(8명)을 도시경관과에서, 광고물디자인팀(5명)과 광고물개선팀(10명)을 가로경관과에서, 보상팀(5명)을 도로과에서 이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김 병 욱)

- 도시디자인과 및 공공디자인팀의 신설로 인하여 5국 1단 3담당관 24과 181팀에서 5국 1단 3담당관 25과 182팀으로 1개과와 1개 팀이 늘어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 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 단위 이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전의 표준정원제의 시군구 5급 이상 정원의 책정과 한시정원 책정할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 도시디자인과 신설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및 도시미관에 증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청소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 도로과 보상팀을 가로경관과로 이관 통합 운영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되나 과 및 팀의 잦은 신설 또는 이관으로 대민업무 처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연월일 : 2008. 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노후, 낙후된 공업도시의 이미지 개선 및 친환경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도시 조성 필요성 대두
-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에 따라 관련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광고물관련 업무 등의 소속 부서 재조정으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경쟁력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신설

- 도시디자인과
 -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사업 추진
 - 가로환경개선 등 영등포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추진
 - 공공디자인 표준화 계획 개발 및 지원
 - 영등포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 가로경관과 광고물디자인팀, 광고물개선팀을 이관
 - 공공디자인팀 신설

나. 부서 소속 변경

- 청소과 : 도시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소속 변경
 - 청소업무의 성격상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추진하는 업무이므로 지역주민의 복지, 문화, 환경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

다. 팀 신설

- 공공디자인팀(5명)
 -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 총괄
 - 가로환경개선 등 영등포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 아름다운 도시 조성 및 쾌적한 가로환경 기반조성 사업 추진

라. 팀 이 관

- 디자인기획팀(8명) : 도시경관과에서 이관
- 광고물디자인팀(5명) : 가로경관과에서 이관
- 광고물개선팀(10명) : 가로경관과에서 이관
- 보상팀(5명) : 도로과에서 이관

3. 참고사항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 : (2008. 1. 11~ 1. 16) 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를 둔다.

제7조제2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3.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시환경국) 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

제8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5.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옥외광고물 관리 등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
15.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제6조(생략)</p> <p>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u>가정복지과 및 문화체육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1. ~ 10.(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8조(도시환경국)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경관과, <u>청소과</u>,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 ~ 3.(생략)</p> <p>4. <u>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p>5. <u>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u></p> <p>6. <u>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u></p> <p>7. ~ 11. (생략)</p> <p>12. <u>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p>	<p>제1조~제6조(생략)</p> <p>제7조(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u>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및 청소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1. ~ 10.(생략)</p> <p>11. <u>청소대행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p>12. <u>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와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u></p> <p>13. <u>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u></p> <p>14. <u>정화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u></p> <p>제8조(도시환경국)① 도시환경국에 도시경관과, <u>도시디자인과</u>, 건축과, 공원녹지과, 및 맑은환경과를 둔다.</p> <p>② (생략)</p> <p>1. ~ 3.(생략)</p> <p>4. <u>영등포디자인 개선 및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u></p> <p>5. <u>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p> <p>6. <u>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u></p> <p>7. ~ 11. (생략)</p> <p>12. <u>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9조(건설교통국)</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옥외광고물 관리 등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p> <p>4. ~ 17. (생략)</p>	<p>13. (생략)</p> <p>14. 옥외광고물 관리 등 가로경관에 관한 사항</p> <p>15.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변상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p> <p>제9조(건설교통국)</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u><삭제></u></p> <p>3. ~ 16. (생략)</p>